

예 산 총 칙

2012년도 본예산

제 1 조 2012년도 세입·세출 예산총액 및 회계별로 일시 차입할 수 있는 최고액은 다음과 같다.

(단위:천원)

구 분	세입·세출예산총액	일시차입한도액
합 계	5,350,323,412	160,509,702
일반회계	4,658,996,488	139,769,895
특별회계	691,326,924	20,739,808
공기업특별회계	315,210,675	9,456,320
지역개발기금특별회계	315,210,675	9,456,320
기타특별회계	376,116,249	11,283,487
대학운영특별회계	8,805,637	264,169
원자력발전지역개발특별회계	33,923,986	1,017,720
물이용부담금수질개선	161,308	4,839
의료급여기금사업특별회계	332,357,721	9,970,732
광역교통시설특별회계	867,597	26,028

제 2 조 세입세출 예산의 명세는 "세입세출예산" 과 같다.

제 3 조 채무부담행위사업은 "채무부담행위사업조서" 와 같다.

제 4 조 계속비사업은 해당없음.

제 5 조 명시이월사업은 "명시이월사업조서" 와 같다.

제 6 조 일반회계 예비비는 46,910,000천원으로 한다.

제 7 조 일반회계 지방채차입한도액은 137,600,000천원으로 한다.

제 8 조 지방재정법 제47조 제1항의 단서규정에 의한 총액인건비에 포함된 경비 및 동일 부서에서 동일 부문에 있는 정책 사업 간의 경비는 상호 이용할 수 있다.